

증평군 향토음식 명인·명가 선정 및 관리 지침 [2016. 12. 30] 예규 제1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 명인·명가를 선정하고, 이를 육성 및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 명인”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전문가로 이 지침에 따라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향토음식 명가”란 향토음식을 주메뉴로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이 지침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지정공모)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 명인·명가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
4.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등) ① 군수가 향토음식 명인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가 향토음식 명가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증평군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포함한다) 후 6개월이 경과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향토음식 명가로 지정할 수 없다.

1. 전국 규모의 체인 음식점
2.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야간영업 형태 업소

④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향토음식 명인·명가에 대하여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향토음식 명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증평균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선정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현지심사 후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지심사는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최소 2명 이상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 명인·명가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군수가 향토음식 명인·명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향토음식 명인·명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향토음식 명인·명가에 대하여 향토음식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하여야 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향토음식 명인·명가는 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정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사람 또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청소년보호법 및 건축법 등 식품위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6개월 이상 무단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3.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취급메뉴가 전부 변경되었을 경우
5. 영업자 지위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다만, 직계가족 및 배우자간 지위승계는 제외한다)
6. 관할지역 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향토음식 명인·명가 선정을 취소한 사람 또는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명인·명가 지정증 회수
2. 향토음식 명인·명가 지원 중단

제10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군수는 향토음식 명가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증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향토음식 명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증을 재교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소의 명칭이나 직계가족 및 배우자간 영업자 지위승계로 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증평군 향토음식 명인·명가 선정 및 관리 지침

2. 증평군 관할 소재지 내 장소 이전 또는 지정증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향토음식 명인·명가 선정심사 배점기준표 (조리부문)		
심 사 기 준	배점기준 (100점)	심사점수
1. 음식의 향토성 및 전통성 가. 향토성(전통성)이 짙은 우리고유의 음식임 나. 향토성(전통성)이 다소 개선된 음식임	30	
2. 조리방법의 특이성 가. 전형적인 전통방식(한국식) 조리방법 나. 전통방식을 일부 개선한 조리방법	20	
3. 보전가치 가.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있음 나. 다소 개선된 향토음식이나 보전가치가 있음	20	
4. 대중성 가. 음식의 맛, 색상, 호감도 나. 지역특산물 이용정도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 다. 판매가격의 대중성	30	

☐ 작성기준

- ※ 명인·명가 지정 신청 모두 심사한다.
- ※ 각 심사기준별 배점을 30, 20으로 하여 4개 항목 총점을 100점으로 한다.
- ※ 표기별 배점은
 - 30점일 경우 (탁월30, 우수24, 보통18, 미흡12)
 - 20점일 경우 (탁월20, 우수16, 보통12, 미흡8점)

☐ 판정기준

-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향토음식 명가 선정심사 배점기준표 (환경 및接客부문)		
심 사 기 준	배점기준 (100점)	심사점수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 및 영업장	15	
2. 내수처리된 주방바닥과 주방시설 및 기구 등 설치	10	
3.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보관시설(냉장, 냉동고, 창고 등)	10	
4. 음식의 맛, 색상, 호감도 등 주민 인지도	15	
5. 접근성, 편의시설(주차장 등), 주변여건 등	10	
6.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및 친절서비스 정도	10	
7. 화장실, 음식물쓰레기 및 간판 관리상태	10	
8. 식품관련 기능보유자, 영양사, 조리사 등	10	
9. 음식문화개선운동 및 식품위생법 제반사항 준수여부	10	

☐ 작성기준

- ※ 명가 지정 신청에 한하여 심사한다.
- ※ 각 심사기준별 배점을 15, 10으로 하여 9개 항목 총점을 100점으로 한다.
- ※ 표기별 배점은
 - 15점일 경우 (탁월15, 우수12, 보통9, 미흡6)
 - 10점일 경우 (탁월10, 우수8, 보통6, 미흡4점)

☐ 판정기준

-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 (□명인 □명가) 지정 신청서 (제5조 관련)			
신 청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업 소 명		영업장 소재지	
지정신청음식 (유형)			
영업 및 조리경력	근무 및 조리기간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자격보유	취 득 일	자 격 종 별	발 행 기 관
수상(표창)기록			
위와 같이 증평군 향토음식 (명인, 명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향토음식 조리·제조·가공 방법 설명서 (제5조 관련)

음식명칭									
주 재 료		(통상적 구입처 :)							
부 재 료		(통상적 구입처 :)							
조리특이성									
조리시간									
요리사진						조미식품(고추장·된장·간장 등) 사 용 방 법			
						• 자가제조식품 사용() • 유통식품 사용() ※ 유통식품 사용시 제조사 기재			
재 료	재 료 명	단위	투입량	재 료 명	단위	투입량	재 료 명	단위	투입량
조 방 법	■ 주재료 조리방법								
	○								
	○								
	○								
	○								
	■ 부재료(양념)만들기								
	○								
○									
○									
○									

※ 신청 음식이 2종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향토음식(□명인 □명가) 지정신청자 소개서 (제5조 관련)

■ 인적사항 개요

- 성 명 :
- 거주지(주소) :
- 생년월일 :
- 운영업소명칭 :
- 영업장 주 소 :

■ 자기이력 소개

-
-
-

■ 신청음식 소개

-
-
-
-

■ 현재까지 수상경력

- 시상기관 :
- 표창종류 :

※ 기타 참고자료 :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별지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향토음식 명인 지정증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향토음식 :

귀하를 증평군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지닌 「향토음식 명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향토음식 명가 지정증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향토음식 :

위 업소를 증평군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지닌 「향토음식 명가」
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업형태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업소명칭				
영 업 자		(관계:)		(관계:)
주 소				
증평군 향토음식 명인·명가 선정 및 관리 지침 제10조에 따라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 하				